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수 및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이행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 및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1
1.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관 4
1.1.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등 4
1.1.1.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개념 및 계약의 성립 4
2. 용역계약의 이행 6
2.1.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6
2.1.1.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6
2.2. 용역계약의 이행 및 하자보수 8
2.2.1. 용역의 착수 및 완성 8
2.2.2. 하자보수 등 담보책임 9
2.2.3. 하자보수보증금 10
2.3. 용역대가 지급 12
2.3.1. 대가지급 12
2.3.2. 선금지급 13
2.4. 용역계약 금액의 조정 14
2.4.1.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14
2.4.2.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 17
3. 용역계약의 불이행 및 분쟁의 해결 19
3.1. 용역계약불이행 시 조치 19
3.1.1. 지연배상금 납부 등 19
3.1.2. 계약의 해제 · 해지 등 21
3.2. 분쟁해결 23
3.2.1. 이의신청 및 재심 23

1.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관

1.1.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등

1.1.1.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개념 및 계약의 성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개념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란?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성립

용역계약 체결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용역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 또는 예약의 효력(무효)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계약 또는 예약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준용조문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체결 전 계약의 성립 및 입찰 등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용역계약의 이행

2.1.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2.1.1.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계약보증금 납부에 따른 이행보증

계약보증금의 납부

▪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야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납부방법

▪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해당)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납부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 **Q. 입찰 단계에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했는데요. 계약보증금을 또 납부해야 하나요?**
>
> A. 아니요. 대체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 계약상대자는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후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용역이행보증서 교부에 따른 이행보증

용역이행보증서의 교부

▪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2. 가.).

2.2. 용역계약의 이행 및 하자보수

2.2.1. 용역의 착수 및 완성

용역의 착수

용역의 착수 및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계약의 이행 2. 가. 1)].

- 용역공정 예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용역의 완성

용역 완성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 이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본문).

▪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4항).

▪ 조사설계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그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 포함)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할 때에 실시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검사조서 작성 등

▪ 검사를 하는 사람은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용역목적물의 인수

▪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2. 나.1)).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인수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2. 나. 2)).

▪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정함)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를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3.).

2.2.2. 하자보수 등 담보책임

계약의 담보책임

용역계약의 담보책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민법」상 도급계약의 담보책임기간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민법」 제670조제1항).

▪ 용역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용역 완성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하자 검사 및 보수

하자 검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계약금액이 3천 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

하자보수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2.2.3.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납부비율

▪ 계약상대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본문,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70조제1항제6호).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상장증권, 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

> ※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 할 수 있는 **보증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용역계약 이행-용역계약의 이행보증-용역계약의 이행보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보관

▪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2항).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면제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4항제2호).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 √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2.3. 용역대가 지급

2.3.1. 대가지급

대가 및 지연이자의 지급

대가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완성의 검사를 마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 계속비계약의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 동일한 계약에서 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지연배상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참조)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기성대가의 지급

▪ 기성 부분 또는 기납(旣納)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3항).

▪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2.3.2. 선금지급

선금지급 대상 및 범위

선금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금을 최초 지급시 일정률(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가.).

선금지급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나. 1)］.

- 용역계약
- 입찰참가자격 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지급하는 노무비는 제외)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함

선금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30%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나. 2)］.

선금지급 예외

▪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의 선금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라.).

-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보증서 등의 제출

▪ 선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4. 가. 1)］.

※ 선급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보증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용역계약 이행-용역계약의 이행보증-용역계약의 이행보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계약상대방과 체결할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4. 가. 2) 참조］.

※ 그 밖에 선급지급 시 유의 사항 및 선급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 용역계약 금액의 조정

2.4.1.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의 조정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용역 등의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전단).

▹ 입찰일[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 이하 같음]을 기준일로 하여 아래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위 1.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 위 1.의 등락폭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3항).

가.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함

나.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함

▸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4항).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의 평균지수(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의 평균지수를 말함)

√ 위 지수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 중 하나에 따라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

▪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하며, 이미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전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노무비의 조정에 따라 함께 조정되는 비목별 금액을 포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0항).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 물가 변동 조정률 산출요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판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및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대가가 조정 전에 이미 지급된 경우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및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가 조정 전에 이미 지급된 경우에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 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국가나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제19조의 위임규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는 원래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로 개정하면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완화하고 물가변동률 산정의 기준시점을 입찰일로 조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하여 원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하였던 협의·결정에 관한 의무와 권한을 없애고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대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원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지만, 개정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국가계약법」 제19조와 그 시행령 제64조 개정 전후의 문언과 내용, 공공계약의 성격, 국가계약법령의

> **체계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권리 행사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

2.4.2.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

과업내용 변경과 조정

과업내용 변경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8. 가.).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8. 나.)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8. 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

조정방법

▪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

- 증감된 용역량의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함)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과업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업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과업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과업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비용의 절감, 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과업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

조정기간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다. 1)).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다. 2)).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조정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및 과업내용 변경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3. 용역계약의 불이행 및 분쟁의 해결

3.1. 용역계약불이행 시 조치

3.1.1. 지연배상금 납부 등

지연배상금 납부 및 산정

지연배상금 납부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지연배상금률

▪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에 지연배상금률(1000분의 1.3)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3호).

▪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2항).

▪ 납부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위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3항).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않은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4항).

지체일수 산정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바. 1), 2)］.

구분	지체일수 산정
용역수행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1. 용역 완성의 검사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2. 용역수행 기한 이후에 검사과정에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함
용역수행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	용역수행 기한의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후단).

계약의 연장

계약기간의 연장 청구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11.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라.).

▪ 계약담당자는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다.).

> ※ 계약불이행의 경우 입찰참가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입찰참가-입찰 참가자격 및 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2. 계약의 해제 · 해지 등

용역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2. 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위의 1. , 3. 및 4.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

-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제·해지 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가.).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나.).

▪ 지방자치단체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다.).

- 용역완성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또는 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용역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
- 전체 용역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라.).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제권·해지권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5.).

- 용역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 용역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용역 수행의 정지

▪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가.).

- 용역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7. 참조).

3.2. 분쟁해결

3.2.1. 이의신청 및 재심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대상

▪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②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제4호제2항).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에 관한 사항
-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 포함)에 위배된 사항,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 등과 관련된 사항,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이의신청 기간

▪ 이의신청은 위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결과 통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재심청구 등

재심청구

▪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및 제35조).

재심청구 등의 절차

▪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청구인 등”이라 함)는 계약분쟁조정 신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3절 조정의 청구 등 1. 가.).

-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이의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근거
-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 그 밖에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

재심처리 절차

재심청구의 수리

▪ 위원회는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수리하고 심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3절 조정의 청구 등 4.).

▪ 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심사·조정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위원회는 위에 따른 심사·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도지사 등, 청구인 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2항).

※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1항).

▪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을 완료되기 전에 해당 부정당업자, 시도지사 등,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도지사 등 청구인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

▪ 위원회는 청구 또는 신청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

▪ 위원회는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사항으로 청구인 등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2항).

※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 또는 신청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또는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Q. "재판상 화해(和解)"란 무엇인가요?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참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합니다.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참조).

재심청구의 각하

▪ 위원회는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3절 조정의 청구 등 3.).

- 재심청구 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 이미 해당 청구 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청구가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 아닌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중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 신청,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 및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청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부담

▪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다음의 비용은 청구인 등이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